

1. 住宅分讓價原價連動制施行指針中 改正指針

建交部 住政 第58500-152號 1996. 1. 27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택사업자는 1996년 1월1일 이후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비에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만원/평(3.3058m²)

구 분	층별	건축비 상한가격(분양면적에 적용)
전용면적 25.7평(85m ²)이하	15층 이하	168만원
	16층 이상	187만원
전용면적 25.7평(85m ²)초과	15층 이하	175만원
	16층 이상	196만원

부 칙

1. 이 지침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